

동의대학교

현장실습학기제 안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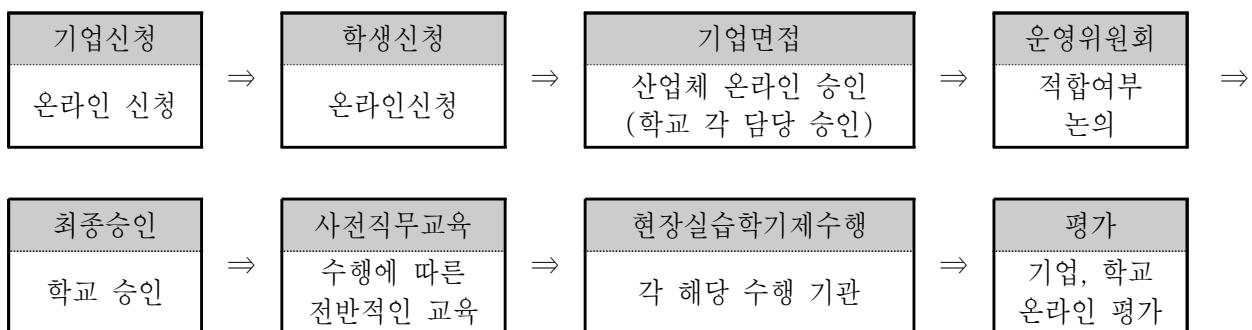
동의대학교
DONG-EUI UNIVERSITY

■ 현장실습학기제란 ?

- 현장실습기관과 산학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수업 방법을 말하며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하기제로 구분한다.
- “표준 현장실습학기제”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 2021-19호 제2장 및 제3장의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“자율 현장학습학기제”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형태를 말함.

■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정

-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체계도



- 월별 추진일정

구분	개월	기업·학생신청	수행기간	평가	수행일수
1학기(장기)	4개월	1월~2월	3월~6월	6월말	15주 이상
하계(단기)	1개월,2개월	5월~6월	7월~8월	8월말	1개월 2개월
2학기(장기)	4개월	7월~8월	9월~12월	12월말	15주 이상
동계(단기)	1개월,2개월	11월~12월	1월~2월	2월말	1개월 2개월

※ 월별 추진일정은 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학점연계

실습수행개월	1개월	2개월	15주 이상
부여학점	3학점	6학점	17학점~18학점

※ 수행기간 종료 후 기업 및 학교 지도교수 평가에서 PASS시 학점이 부여됩니다.

■ 실습기관 자격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
-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
-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(비영리법인),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
-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(유치원 포함) 단, 학교기업,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및 대학교의 부속기관(연구실, 연구소, 센터, 행정기관 등으로 별도 법인)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됩니다.
-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

■ 실습기관 제외대상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, 「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」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기관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기관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,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「의료법」, 「약사법」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등에 따른 보건·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기관 등
- 1인 사업장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인 결과 근무환경 조건이 실습기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

■ 참여방법

-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(<https://placement.deu.ac.kr/>) 회원가입 후 신청 하여야 합니다.
- 신규 신청 기업체의 경우 최초 회원 가입을 하여야 로그인 가능하며, 종전 신청자의 경우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로그인(등록된 아이디, 패스워드) 후 관련정보 확인(수정) 및 해당 현장실습 수행 학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세부 사항은 [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(기업체용)] 을 참고하여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준수사항

- 기업체는 직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(전체 실습시간의 **최소 10% 이상 최대 25% 이하**) * 최저임금 100%를 실습지원비로 지급하더라도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10% 이상 배정
-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협약서(직무기술서) 상의 실습기간, 실습장소 및 실습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교육부 고시 제2021-19호 [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]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운영 시간은 1일 8시간(주 40시간)을 기준으로 연속적 운영해야합니다.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
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,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실습기관이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 실습기관은 운영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협의 후 운영될 수 있습니다.
-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하며,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, 산업체 개별 휴업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하여야 합니다.
-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실습 기간이 **1개월 기준 1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**
- 예비군 훈련, 경조사,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은 수행일수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.
- 재택실습은 실습기간 일수 20일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. (단,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하에서 인정한다)

■ 실습수당 지급

-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“교육지원비용”으로 실습생에게 실습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실습기관이 실습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**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.**

☞ 2025년도 실습비 산출금액 구분

- ① 근로형: 75%(1,572,203원)~100%(2,096,270원 이상),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
- ② 직무교육형: 운영하지 않음

※ 실습수당 금액 산출은 교육부 고시 제2021-19호 “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” 기준임.

- 연장·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「최저임금법」에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·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.
-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현물(식사, 기숙사, 교통비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.
- 직무교육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
 - ▶ 기업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하되, 학생과 공유하여 보고서에 교육내용이 기재 될 수 있도록 합니다. 실습생의 경우 사전직무교육 시 보고서상에 기재되도록 안내될 예정임.

▶ 양식(예시)_직무교육 25% 적용 시

현장직무교육(OJT) 지도계획서(1개월기준)		
주차	교육내용	직무교육시간
1주차	· 오리엔테이션, 조직체계 안내, 직무에 대한 기본지식 전달	10
2주차	· 현장 직무교육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, 개발 교육	10
3주차	· 공문제작, 온라인 회의 교육 참관 등	10
4주차	· 전공직무교육 I, 전공직무교육 II, 실무체험 등	10
합계		40

■ 근로계약

- 근로계약은 실습 중 발생 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“근로형”에 대해 체결할 수 있으며,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.

■ 산재보험 가입

-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.(고용노동부 고시 2018-69호 개정)
- 실습기관에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신고하며, 일반 근로자의 고용신고와 동일합니다.
- **실습운영 계획 중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(필수가입!)**
-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**1주일 이내로 본교로 제출** 하여야 합니다.(실습학생에게 전달하여 학생 현장실습운영시스템내 업로드 협조)

■ 신청 자료제출 사항

- 2025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은 본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직무기술서 등록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.

■ 기타사항

- **학생 신청 후 면접 및 승인(온라인)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 학생 참여에 대한 산업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교 지도교수, 학과장 승인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,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- 실습 종료 마지막주에 기업 성적평가가 이루어지며, 출근부 및 보고서의 경우 교육실습생이 작성하며, 기업의 경우 확인 후 최종 승인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사전 학생 참여 전 업무내용, 수당지급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하여 이후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.

■ 문의처

- 담당부서: 동의대학교 학생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(☎051-890-4469,1063)
- 이메일: 김난희(14624@deu.ac.kr) / 정대억(dujung@deu.ac.kr))

■ 동의대학교 실습수당 산출 /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(교육부 고시 제2021-19호)

- 1개월 기준: 20일 이상
-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: 10,030원
- 주 단위 실습시간 수: 40시간
- 직무수행비율 100% 금액: 금2,096,270원
 - * 직무수행비율이 100% 일지라도 10% 의 직무교육시간 의무
- 직무수행비율 75%금액: 금1,572,203원
- 동의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은 최저임금의 75%이상(최저 1,572,203원)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실습지원비는 기업에 여건에 따라 2,096,270원보다 상향 할 수 있습니다.
- **2024년 LINC3.0 사업 종료로 동의대학교에서 지급되는 지원비는 없습니다.** 단, 2025년에도 사업관련 실습비가 지원 되는 경우는 안내드리겠습니다.



동의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